

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(국회운영위원장 제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국회기록물의 관리 업무를 독립기관인 ‘국회기록원’이 전담하도록 한 「국회기록원법안」에 맞추어 국회도서관의 직무 중 “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·분류·정리·보존·평가·활용 업무”를 삭제함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